

大法院判例를 통해 본

工業所有權制度的 紙上分析

- …… 工業所有權制度的 紛爭은 어떠한 過程을 거쳐 解決되는가? 모든 紛爭……○
- ……이 그렇듯이 工業所有權制度도 大法院에서 解決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
- …… 다만 地方法院 대신 審判所, 高等法院 대신 抗告審判所를 거쳐 大法院에……○
- …… 上訴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
- …… 그러면 어떤 紛爭들이 大法院까지 上訴되어 어떻게 解決되었는가? 이에……○
- ……本誌는 「判例研究」를 위하여 工業所有權 4法の 代表的인 大法院 判例를……○
- ……모아 分析해 보았다. ……<編輯者註>……○

◎ 第 12 回 ◎

私文書의 證據力

私文書의 眞正成立에 關한 立證責任

審判請求人이 提出한 甲各號證(各確證書)은 그 眞正成立을 主張하는 請求人이 이 點에 關한 立證責任을 지는 것이고 甲各號證은 私的 造作文書라고 主張하는 被請求人이 具體的인 反證의 提示가 없다고 하여 甲各號證의 眞正을 推定한 것은 書證의 眞正成立에 關한 立證責任의 所在을 顛倒하여 立證責任없는 被請求人에게 이 點에 關한 立證이 없음으로 因한 不利益한 結果를 歸屬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 大法院(第3部) 1971. 4. 20 宣告, 70후 43判決(意匠登錄 無效 1970. 5. 30, 1970 抗告審判 第32號 審決)

審判의 取下

審判請求 取下의 效力發生時期와 取下取消申請의 適否

審判請求人에 依하여 適法하게 이루어진 審判請求의 取下의 效力은 取下書가 提出되어 接受한 接受時에 發生하는 것이므로 取下는 取消할 수 없다.

※ 大法院(第3部) 1970. 6. 30 宣告 70후 7判決(特許 無效 1970. 1. 23, 1969 抗告審判 第131號 審決)

無効審判 繫屬中の 特許權

無効審決 未確定中の 特許權의 地位

無効로 審決이 되었다 할지라도 不服하여 抗告審判

部에 繫屬되고 있으면, 그 特許는 有效히 存續되고 있어, 特許로서의 價値가 없음을 前提로 하는 論旨는 採用할 것이 못된다.

※ 大法院 1964. 11. 30 宣告, 64후 18判決(特許權利 範圍確認, 1964. 4. 25, 1963 抗告審判 第94號 審決)

請求人의 方法의 第1128號 發明特許가 비록 論旨가 말하는 바와 같이 特許局 審決에서 無效로 審決되었다 할지라도 不服에 依하여 現在 이것이 特許局 抗告審判部에 다시 繫屬되고 있는 것이 論旨가 말하는 바와 같다면 아직 위의 特許는 有效히 存續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므로 위의 特許가 特許로서의 價値가 없음을 前提로 하는 論旨도 採用할 것이 못된다.

再 審

確定審決이 判斷한 事由는 判斷의 遺脫이 아니다.

確定審決에 再審請求人이 主張하는 事由에 對한 判斷이 있는 以上 設使 그 判斷內容이 不當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들어서는 判斷遺脫을 理由로 再審을 請求할 수 없다.

※ 大法院(第4部) 1976. 6. 22 宣告, 74후 5判決(登錄 實用新案 權利範圍確認 1974. 9. 6, 1972 再審抗告審判 第1號 審決)

再審의 專屬管轄

記錄에 依하던 被審判請求人(再審請求人, 以下 再審請求人이라 한다)은 그 再審請求 理由로, 이 事件 確定判決인 大法院 1980. 11. 11 宣告, 80후 79事件(以下

大法院判決이라 한다)의 上告理由에서 위 事件의 原審인 特許廳 抗告審判所 1980. 6. 12자 1980년 抗告審判(當) 第32號決(以下 原審審決이라 한다)에는 再審請求人이 原審에서 “甲第21號證과 甲第22號證은 甲6第號證에 對備하여 불매 그 證據力이 없는 것으로서 이로 因하여 本件 考案의 登錄이 無效가 될 수 없는 것이고 本件 考案登錄은 고정판部分에 있어 甲第20號證의 것 에 비하여 進歩性있는 考案이라는데 對하여 詳細히 추 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原審은 이에 對한 具體的인 對 備에 對한 說示와 判示가 없이 甲第21, 同 第22號證을 각 引用하여 이 件 實用新案登錄을 無效라고 審決하였 으니 原審審決에는 採證法則을 違反하고 審理未盡 및 理由不備의 違法이 있다고 主張하였으나 大法院判決에 서는 이에 對한 判斷을 전혀 한바 없이 原審審決을 結果 的으로 옳다고 支持하여 上告를 棄却하였으나 위 大 法院判決에는 判決에 影響을 미칠 重要한 事項에 對하 여 判斷을 遺脫한 잘못이 있고, 이는 民事訴訟法 第 422條 第1項 第9號의 再審事由에 該當한다고 主張하면 서 原審判決을 再審對象으로 하여 特許廳 抗告審判所 에 이 事件 再審請求를 하였음이 分明하다.

그러나 確定된 終局判決(特許에 있어서는 審判 또는 審決)에 對하여 再審事由가 있다 하더라도 當事者가 上訴에 依하여 그 事由를 主張하였거나 이를 알고 主 張하지 아니한 때에는 再審의 訴(또는 特許訴訟에 있 어서는 再審請求)를 提起할 수 있음은 民事訴訟法 第 422條 第1項의 但書의 規定上 明白한 뿐만 아니라, 이 事件 再審請求人의 主張에 依하더라도 이 件 再審事由 는 위 大法院判決에 影響을 미칠 事項에 關하여 判斷 을 遺脫하였다는 것이고 原審判決에 再審事由 있다는 아무런 主張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 事件 再審對象은 위 原審審決이 아니라 위 大法院判決이 明白하다 할 것이므로 이 再審의 訴는 위 大法院 判決을 再審對象 判決로 하여 民事訴訟法 第424條 第1項에 의하여 그 專屬管轄 法院인 當院에 提起하여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위 大法院判決을 再審對象으로 하여 當 院에 再審의 訴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大法院 判決에 再審事由 있음을 理由로 再審對象으로 삼을 수 없는 原審審決을 再審對象으로 하여 原審에 한 이 事件 再 審請求는 不適當하여 却下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原審이 이를 간과하고 再審事由의 有無를 審理한 후 그 理由없다하여 이 件 再審請求를 棄却(再審不成 立)하였음은 不當하다 할 것이나 이 事件 再審請求를 解釋한 점에 있어서는 妥當하므로 原審決은 結果的으 로 正當하다.

※ 大法院 1982. 12. 14 宣告 81후 53判決

詐害審決의 否定

再審對象事件의 當事者는 同一業所의 社長과 專務사 이 이기는 하나 이는 利害關係가 成立되거나 그 當 事者가 詐害審決을 받았음을 認定할만한 證據는 없으 므로 이는 再審事由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不適合 하다.

※ 大法院 1980. 7. 22 宣告 79후 76判決(登錄實用新 案 權利範圍確認 1979. 8. 31, 1977 抗告審判(當) 126號 審決)

記錄에 依하면 本件 再審對象審決(特許局 審判所 1974. 8. 28 字, 1974年 審判第92號 審決)은 그 審決의 審判請求人과 審判被請求人이 같은 業所의 社長과 專 務의 關係에 있어 正當한 利害關係가 없음에도 不拘하 고 相互 共謀하여 第3者의 權利 또는 利益을 詐害한 目的으로 實用新案權의 權利範圍에 關한 確認審判을 請求하여 얻은 審決로서 舊實用新案法(1963. 3. 5 法律 第1294號) 第28條에 依하여 準用되는 舊特許法(1963. 3. 5 法律第1293號) 第135條의 詐害審決에 該當한다는 趣旨의 再審審判請求人들의 再審審判請求에 對하여 原 審決은 本件 再審對象 審決의 審判請求人과 審判被審 判請求人이 같은 業所의 社長과 專務의 關係에 있어서 도 審判請求人은 그의 實用新案權이 審判被請求人에 依하여 侵害 當할 憂慮가 있었기 때문에 그 審判을 請 求하였던 것으로 認定되므로 그 審決의 當事者 사이에는 正當한 利害關係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再審 對象審決의 當事者 사이에 正當한 利害關係가 없었다 고 하여도 그 事實만으로 그 審決을 곧 詐害審決이라고 斷定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本件 再審對象 審決이 詐害審決임을 認定할만한 證據가 없으며 따라 서 再審審判請求人들의 本件 再審審判請求는 舊特許法 第135條 所定の 再審事由가 있다고 할 수 없어 不適合 하다고 判斷하고 있는바, 原審이 위 認定과 判斷을 爲 하여 거기서 證據取捨關係를 記錄에 對照하여 檢討하 면 原審의 措置는 正當하고 거기에 所論과 같은 法理 誤解, 事實誤認, 審理未盡, 理由不備 등의 違法은 없으 며, 또한 再審對象審決이 當事者 適格이 없는 當事者 사이에 이루어진 違法한 審決이라는 事由는 本件에서 別個의 再審事由로서 主張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原審이 같은 見解에서 이 點에 關하여 判斷하지 아니 한 것에 所論과 같은 判斷遺脫의 違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結局 論旨은 모두 理由없어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계속>